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사회적경제기본법안

검 토 보 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기본법 제정〉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43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6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6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지원체계	10
3.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4
4. 조문별 검토(제1장): 총칙	21
가. 목적, 기본원칙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안 제1조·제2조 및 제4조~제6조)	21
나. 정의(안 제3조)	25
1)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의 정의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25
2) 사회적경제기업 및 그 외 정의 규정 (안 제3조제3호~제8호)	31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	36

5. 조문별 검토(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38
가.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38
나.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안 제9조~제13조)	43
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14조)	47
6. 조문별 검토(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49
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안 제15조~제21조)	49
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안 제22조)	58
다.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안 제23조)	60
라. 중간지원조직 체계: 권역별 /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 제24조·제25조)	65
7. 조문별 검토(제4장):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	70
가. 사회적금융 제도정비 및 사회적금융기관 지정·육성 (안 제26조·제27조)	70
나.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 (안 제28조~제32조)	75
8. 조문별 검토(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육성	80
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대부 등 우대조치 (안 제33조·제35조·제36조)	80
나.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보급 및 그 밖의 지원 규정 (안 제34조, 안 제37조~제41조)	85

9. 조문별 검토(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90
가.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안 제42조 · 제43조)	90
10. 조문별 검토(제7장): 보칙	94
가. 자료제출 요구권 및 국회보고(안 제44조 · 제45조)	94
나. 벌칙 및 과태료(안 제46조 · 제47조)	9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7. 11.

다. 회 부 일 : 2024. 7. 12.

II.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는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음.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고, 중간지원기관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조정하는 등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및 한국사회적경제원이 총괄하도록 하여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과 사회적경제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조직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한 배당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⑤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를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제3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기업·법인·단체로 정의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사회적경제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 및 품목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 및 제6호, 제8호).

- 다.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7호).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의함(안 제4조제1항 및 제6항).
- 사. 사회적경제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 발효 후 관련 개별법의 제·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함(안 제7조).
- 아.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성과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기반 확충과 시·도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예산, 조달, 금융, 세제, 기금 등의 지역발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13조).

- 카.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 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민·관협치에 의한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총괄부서로서 정책조정기능과 예산확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 파.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운영은 중앙의 위원회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로 함(안 제18조).
- 하.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 협의체·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거. 정부는 부처간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사업수행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23조).
- 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력하여 상생 효과를 내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중앙과 지방에 별도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과 운영분리원칙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영감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운영은 사회적금융기관등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차원의 사회적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상호금융, 공동체기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조성·운영하는 민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32조).

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3조).

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우선구매,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 시설비등의 지원,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참여 촉진 및 민간자원 연계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제시하여 개별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조직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공동사업·사업협력, 협의체 구축 및 조직통합, 공유자산형성과 공동판매망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창업활동 촉진과 사회적경제에의 참여를 증진시키기로 함(안 제41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한국사회적경제원 등 추진체계 마련, 사회적금융·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제정안은 총칙,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보칙 등 총 7장과 총 47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제1조)		○사회적 경제의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정의 (제3조)	사회적 경제 (제1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 가치 (제2호)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인권 신장,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 평등한 고용기회, 국민 건강의 증진, 지역공동체 재생,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을 포괄하는 가치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 경제 조직 (제3호 ~ 제6호)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업법인단체·소비자생 활협동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신협·새마을금 고·중소기업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우수문화사업자 등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연대조직 ○ 그 밖에 사회적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 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직
	사회적 금융 (제7호)	○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 정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계정 등을 마련해야 함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원칙 등과 맞게 하며, 이 법 발효 후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기본계획 수립 등 (제8조 ~ 제14조)		○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상향식, 5년, 정부) ○ 부문별 발전계획/시행계획 (5년/1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도 지역별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5년/1년, 시·도지사) ○ 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다른 계획과의 관계
사회적경제 위원회 (제15조~제20조, 제44조, 제45)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대통령 소속) - 위원장 2명(기재부장관, 민간위원 중 1인) 포함 40명 이내, 민간 위원 과반수 -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및 전문위원 (위원회에 설치) ○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시·도지사 소속) ○ 협의 및 조정,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자료제출 요구권, 국회 및 시·도의회 보고
사회적경제 통계조사 (제21조)		○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회 적경제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제22조)		○ 사회적경제연대조직(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 경제원 (제23조, 제46조, 제47조)	○한국사회적경제원(기재부 운영·감독 총괄, 고용부·행안부 협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확대 개편 ○비밀유지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제24조, 제25조)	○권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중앙정부 지정, 시·도 단위) ○지역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지자체 설치, 시·도 단위)
사회적금융 (제26조, 제27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금융 제도정비 노력의무 및 사회적금융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지정·육성(정부 및 지자체)
기금 설치 (제28조~ 제32조)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 재원: 정부·지자체 출연금,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 용도: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운영 및 금융 지원, 사회적경제 자본 시장 조성 등 - 운용·관리: 기재부 / 심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역기금 설치 가능(지자체) ○민간기금 설치 가능(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금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제33조~ 제37조)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국공유재산 등을 할인 또는 무상 임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며, 일반기업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시 조세감면 혜택 가능 ○설립·운영의 전문인력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조직 경영컨설팅 지원 의무, 시민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 개발·시행 노력
민간참여· 국제협력 등 (제38조~제41조)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국제협력 등 ○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 및 참여 증진
공개· 공시의무 (제42조, 제43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회의록 등 공개·공시의무

한편, 과거 논의현황을 살펴보면, 제19대~제21대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바 있으나, 의결되지 못하고 모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바 있음. 과거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관련 과거 발의 법률안 >

국회	법률안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심사결과
제19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1910422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신계륜의원	1912030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박원석의원	1912395	임기만료폐기
제20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2001614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2002616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강병원의원	2019005	임기만료폐기
제21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2101880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강병원의원	2102535	임기만료폐기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김영배의원	2104663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장혜영의원	2104988	임기만료폐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양경숙의원	2105051	임기만료폐기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지원체제

“사회적경제”는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나,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가진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¹⁾²⁾³⁾

사회적경제는 시민적 가치 및 형평성을 중심으로 사회 재분배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민주적 참여와 수익배분 제한을 통한 사회적 소유를 강조하고,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국가와 시장에서 미충족된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는 것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계기로는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⁴⁾

1) OECD, Social Enterprises, (1999), 1~72쪽, OECD,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OECD, (2001). OECD, The Non-Profit Sector in a Changing Economy. Paris: OECD, (2003)

- 김중호, 사회적 기업 개념의 범주화에 대한 법적 담론, 법학논고 제47집, 2014. 8.에서 재인용

2) 유사한 맥락에서 ① 유럽연합(EU)은 사회적경제를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 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② 캐나다 퀘벡 주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3)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는 제3부문(the third sector), 비영리섹터(non-profit sector), 자활 조직(voluntary organizations),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시민경제(civil economy),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됨

< 사회적경제 법제화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포용적 성장”과의 관계 >

○ 사회적 경제에 대한 법률제정 국가 현황

- 스페인(사회적경제법, 2011), 에콰도르(서민연대경제금융법, 2011)
- 멕시코(사회연대적경제법, 2012), 캐나다 퀘벡(사회경제법, 2013)
- 포르투갈(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 2013), 프랑스(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2014)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개념

- 사회적경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이며, 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음
- EU : 지역적으로 가장 소외된 계층까지 포함하여 공동체 모두에게 성장의 이익이 고르게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용적 성장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
- OECD : 포용적 성장을 경제성장으로부터의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 걸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제성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UN : 2015년 9월 발표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핵심원칙 중 하나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발전(No one left behind)」을 제시하여 개발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번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 형태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들 주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⁵⁾

4) 실제로 2009년 유럽연합(EU)은 사회적 경제 개념인식·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퀘벡주 등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구체적인 예로는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성과 채권(민간투자자로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사회적 성과를 달성했을 때 약정에 따른 투자금 회수와 수익 상황을 보장),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등을 들 수 있음]

5)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현행법 중 사회적경제의 실현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사업시행 근거 법률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현황 >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행정안전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시작 연도	2007년	2012년	2010년	2012년
주요 참여자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수 ('23년말)	3,737개	25,462개	1,800개	945개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은 '24년부터 폐지)		권역별 마을기업지원센터 17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16개 지역자활센터 250개
지원내용	· (경영) 성장지원 센터 운영, 판로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컨설팅 · (세제) 법인·소 득·지방세 감면 등	· (경영) 설립·운영 자문 및 정보제공, 교육·홍보, 공공 기관 우선구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 (재정) 사업비 · (경영) 컨설팅, 교육·홍보	· (재정) 한시적 인 건비 · (경영)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홍보
2024 예산	830억원	16억원	27억원	수급자수 기준 자활근로 인건비 지자체 보조 (자활기업 인건비 별도 편성 X)

※ 자료: 기획재정부, 2024

다만, 그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는 개별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고, 지원기관도 다양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온 것으로 보임. 특히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일선 집행단위에서는 각 사업간 연계성이 큼에도 주무부처가

자) 등을 들 수 있음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관리 및 보조금 정산업무 등이 제각기
진행되어 비효율적이고 행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실무단위에서는 제
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의 지원정책 수
행에 있어 총괄조직을 기획재정부 및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일원화하
여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3.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21대국회에서는 1번의 공청회⁶⁾와 4번의 법안소위⁷⁾, 1번의 안건조정위⁸⁾를 통해, 제20대국회에서는 1번의 공청회⁹⁾와 4번의 법안소위¹⁰⁾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제21대국회와 제20대국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사회적가치·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추진체계 일원화, 우선구매 등 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음. 주요 논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제21대국회에서의 주요 논의 요지 >

쟁점	찬 성	반 대
법 제정 필요성	○ 코로나19 하에서 심화된 빈부격차, 고용불안과 같은 시장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 [소위원회('20.11.23.)] ○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이므로 기본법 제정이 필요 [소위원회('20.11.23.)]	○ 이미 개별법하에서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본법 제정이 아니라 개별 정책으로 시장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함 [소위원회('20.11.23.)] ○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여러 분야를 하나로 묶어 법을 제정할 경우 상충이 발생하고 협동조합, 자활기

6)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21. 6. 15.)

7)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0. 11. 23.)

제4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3. 3. 15.)

제40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3. 3. 21.)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23. 5. 15.)

8) 제392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2021. 12. 31.)

9)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2016. 11. 2.)

10) 제356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8. 2. 1.)

제36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8. 8. 24.)

제363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8. 8. 29.)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019. 3. 27.)

쟁점	찬성	반대
	○ 정부·지자체가 추진동력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 [소위원회('20.11.23.)] ○ 사회적경제는 고용,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법 제정 필요 [소위원회('23.3.15.)]	- 업, 마을기업 등의 조직을 통할하는 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소위원회('20.11.23.),('23.3.15.)] ○ 지자체와 각 중앙부처를 포괄해서 기재부가 종합적으로 끌어나가는 것은 현재의 경제 운용 기본구조와 상반되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올 우려 [소위원회('23.3.15.)]
사회적가치·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의	○ 일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자리 부분이 제외되어서는 안됨 [소위원회('23.3.21.)] ○ 지역별로 사회적경제기업 포함 여부를 제한하거나 고용자 수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동력을 감소시킬 우려 [소위원회('23.3.21.)] ○ 농협 가운데에서도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사회적경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 [소위원회('23.3.21.)]	○ 사회적가치로 열거된 내용이 상호 충돌할 수 있으며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실행과정에서 범위가 막연해질 우려 [소위원회('23.3.21.)] ○ 금융기관과 상호부조 기관들을 포함한 중앙회, 연합회 등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소위원회('23.3.21.)] ○ 사회적경제기업 포함 여부 기준을 지점별 인원 수, 자본금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가치 측면에서 경제부문과 일자리부문 배제가 바람직[소위원회('23.3.21.)] ○ 개별법상 기업이나 조직들이 사회적경제법 안에 포함되면서 존속 취지나 목적이 중복되거나 불명확해질 우려[소위원회('23.3.21.)]
추진체계 일원화	○ 통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 필요 [공청회('21.6.15.)] ○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기본법 부재로 인해 통합 조율을 통한 운영상 효율성을 갖추지 못함 [공청회('21.6.15.)] ○ 사회적경제법을 전제로 법을 실행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 [소위원회('23.5.15.)]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은 오히려 정치 쟁점화되어 사회적경제의 발전 저해 우려가 있고 위원회의 중립적 운영 조문이 필요[소위원회('23.5.15.)]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개별 조직 간 상충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정도로 국한할 필요[소위원회('23.5.15.)] ○ 공공기관 신설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쟁점	찬성	반대
	○ 재정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재부 산하의 사회적경제원 신설이 필요[소위원회('23.5.15.)] ○ 자본주의에 충실한 조직인 기재부에 경제원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회적경제원 신설시 총리실 산하가 타당[소위원회('23.5.15.)]	될 수 있으므로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불필요 [안건조정위('21.12.31.)] ○ 사회적경제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망라하고 있는 문제[소위원회('23.5.15.)]
지원 및 우대조치	○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자생력을 없앨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 [소위원회('20.11.23.)] ○ 선언적으로 우선구매 등 지원규정 필요[소위원회('23.5.15.)]	○ 개별법상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원 확대는 정부 재정 부담을 악화시킬 우려 [소위원회('20.11.23.)] ○ 사회적경제법에 우선구매 규정이 추가되면 구매의 자율성이나 품질 보장이 훼손될 우려 [소위원회('23.5.15.)] ○ 우선구매 규정이 필요하다면 개별법에서 규정[소위원회('23.5.15.)]
그 외 논의 사항	○ 형식적 입법을 막기 위해 사회적 측면 뿐만 아니라 예산 등 경제적 측면이 성실히 반영될 필요 [소위원회('20.11.23.)] ○ 2008년 이후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사회적경제가 강조되었으며 2009년 EU에서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 [공청회('21.6.15.)] ○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 사항은 지자체나 관련 기관들에서 협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소위원회('23.5.15.)]	○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어 자생적 사회적경제조직의 탄생을 저해할 우려 [공청회('21.6.15.)] ○ 사회적경제기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정치적 활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소위원회('23.3.21.)] ○ 기본법인 사회적경제법에서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구성과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 방향 [소위원회('23.5.15.)]

< 제20대국회에서 주요 논의 요지 >

쟁점	찬 성	반 대
법 제정 필요성	○양극화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음 [공청회('16.11.2.)] ○사회적경제를 통해 노동시장, 소비 시장, 금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음 [소위원회('18.8.24.)]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정부와 소통할 창구가 부족하여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소위원회('18.8.24.)] ○사회적 자본 확대·지역경제 활성화·사회안전망 확충 등 효과 기대 [공청회('16.11.2.)]	○현행 개별법 외에 별도 기본법 제정 필요성·실효성에 의문 [소위원회('18.2.1.), 공청회('16.11.2.)]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정부 및 지자체 업무의 과도한 증가 예상 [소위원회('18.2.1.)]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자생성, 다양성을 해칠 우려 [공청회('16.11.2.), 소위원회('18.8.24.)]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획일화 우려 [공청회('16.11.2.)]
추진체계 일원화	○기본계획 수립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조직이 필요함 [소위원회('18.8.24.)]	○조직별 성격이 상이하여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바람직한지 우려됨 [소위원회('18.2.1.)]
기재부 총괄기능	○기재부가 출괄부서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정지원 등 민원 해결 가능 [소위원회('18.2.1.)] ○기재부에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가 있어야 하므로 경제원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됨 [소위원회('18.8.24.)]	○기재부는 거시경제정책 등 전략·정책기능에 충실해야하므로 기재부 산하 경제원 설치 반대 [소위원회('18.8.24.)] ○사회적경제원에 정책 조사기능만 둔다고 하더라도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소위원회('19.3.27.)]
중간지원 조직	○지방의 고유한 사회적경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지원센터 등 설치 필요 [소위원회('18.8.24.)]	○권역별지원센터 등 불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 [소위원회('18.8.24.)]
사회적 금융	○사회적배려 차원에서 국가가 사회적금융을 지원할 필요 [소위원회('18.8.24.)]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필요 [소위원회('18.8.24.)]	○사회적금융으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가능성 [공청회('16.11.2.)] ○사회적금융 및 이에 대한 정부 출자출연의 타당성에 추가적인 논의 필요 [소위원회('18.8.24.)]
우선구매 조항 등 지원조항	○구매의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 [소위원회('18.2.1.)]	○우선구매 의무화는 조달부문 투명성 저해 및 형평성 측면 우려 [공청회('16.11.2.), 소위원회('18.2.1.)] ○자생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 방식을 고민할 필요[공청회('16.11.2.)]

한편, 제정안과 별도로 현재 개별 사회적경제기업 영역별로 근거 법률 및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 중임. 현행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영역별 관리체계와 제정안을 개략적으로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 제정안과 현행 개별적 사회적경제기업 영역별 관리체계 >

구분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개별법 및 지침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도시재생법/ 마을기업육성 사업시행지침 (마을기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자활사업지침 (자활기업)
목적	사회적경제 체계적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활동촉진	마을기업 육성	자활기업 육성
참여자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저소득층
계획 수립	기본계획 (5년, 정부·시도)	기본계획 (5년, 고용부·시도)	기본계획 (3년, 기재부)	-	기본계획 (3년, 복지부)
	시행계획 (각부처·시도)	시행계획 (고용부)	-	-	-
추진 체계	위원회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협동조합정책 심의위원회	-
	중앙	사회적경제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광역	권역별 지원센터	-	-	권역별지원센터 (17개)
	지자체	지역별 지원센터	성장지원센터 (19개)	-	-
지원 수단	재정 지원	세제지원 사회적금융기관 지정	세제지원	-	사업비
	판로 촉진	시책마련 우선구매	우선구매 촉진	우선구매 촉진	우선구매 촉진
	국유 재산	유·무상 사용 (사회적경제활성화)	대부 또는 사용 (사회적기업 설립 또는 운영)	-	-
	기타	국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한 사무위탁	경영컨설팅	설립지원 경영컨설팅	경영컨설팅
정보 공개	운영 공개	적극공개	-	적극	-
	경영 공시	의무	-	의무	-

※ 자료: 기획재정부, 2024

제정안은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양극화 심화, 고용불안 등 시장경제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임.

다만, 이미 제정안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 개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오히려 사회적경제 부문의 자생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기본법 제정 여부는 과거의 국회에서 논의된 찬·반 근거, 개별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현황, 외국 입법례 등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 개념·범위의 불명확성, 현행 개별법과의 중복·충돌로 인한 법체계 혼란 우려, 일반기업에 대한 역차별 및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우려, 개별법 체계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법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제정안은 별도로 발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

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144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 특히 “사회적가치”의 정의나 “사회적가치위원회”의 설치 등 일부 조문은 당해 제정안 조문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안 심사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해당 조문 심사 경과도 아울러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주요 조문별 검토(제1장): 총칙

가. 목적, 기본원칙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안 제1조·제2조 및 제4조~제6조)

제 정 안
○ 목적 -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 기본원칙 - 사적 이익 창출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 우선 - 국가 등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하게 운영 - 이익을 구성원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 실현에 우선 사용 - 지역공동체 개발 및 지역순환경제발전을 위해 상호부조·협력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및 지역균형 발전정책 수립·추진 -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대국민 사회적경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제공 노력 - 사회적경제 통합계정 마련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 기본원칙 준수,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 노력, 제품 생산 및 품질 개선 노력과 경영 투명성 제고, 노동·인권·환경 등 사회적책임 사항 준수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모든 국민은 사회적경제조직에 자발적 참여를 보장받으며,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추구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은 사적 이익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여야 하고, 이익을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함.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및 지역균형 발전정책 등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한편,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안 제2조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각 개별법상 목적에 맞게 이익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¹⁾

11)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지역농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사회적경제의 도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적 자본의 이윤 창출과 축적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를 가져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발생한 이익을 해당 조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의 사용과 배분은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공동체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해 조직 간에 상호부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사회적경제 민간조직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과 협동정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제공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적정재원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 통합계정 마련과 보충성 원리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제 정 안

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시행·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공공구매 확대 등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시장형성과 공유자산 형성 등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벌,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② 모든 국민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의(안 제3조)

1)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가치의 정의(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 정 안
○ “사회적경제”의 정의 -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 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 “사회적가치”의 정의 -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의 재생,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을 “사회적경제”의 핵심요소로 규정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가치” 12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사회적가치”의 정의에 관하여는 별도로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

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제2조제1호¹²⁾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회적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13개 가치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가치’ 정의 비교 >

제 정 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의원안)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1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나.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다.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라.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 바.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 사.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아.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차.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타.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 정 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의원안)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 과 국민건강의 증진	-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의복지의 제공
-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 합 증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 권의 보장	-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 여의 실현	-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 여의 실현
-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참고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개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해당 개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양 법률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가치들과 상당 부분 중첩되고 있음.

< 지자체 조례에 기술된 사회적 가치에 관한 개념 규정 사례 >

지자체	조례 명칭	사회적가치 개념
서울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다음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 · 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 -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재생 - 남녀의 기회 평등 -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 공동체의 이익 실현 - 윤리적 생산과 유통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부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 지역경제의 활성화 -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 윤리적 생산과 유통 - 근로·생활 환경의 안전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대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제주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익적 성과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 -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과 노동 통합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소득·생활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인적 능력 개발 - 지역·계층·세대별 교육 및 문화 격차 해소 - 그 밖에 소셜벤처(Social Venture), 공정무역(公正貿易) 등 사회공익의 증진과 사회 공공성 실현

이와 관련하여 제21대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사회적가치로 열거된 내용이 상호 충돌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가치의 정의가 포괄적이어서 실행과정에서 범위가 막연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가치의 정의가 구체화·개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영역이고, 문화적 권리는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근간이 되는 사회적 권리이며, 일과 여가의 조화는 인간다운 삶과 직결되는 가치임을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에 “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한다.
 - 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의 인권의 신장
 - 나. 재난과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 유지와 국민안전 확보
 - 다. 사회적 배제 및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통합과 평등한 고용기회의 확대
 - 라.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
 - 마.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 바.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 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 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 없는 노동권의 보장
 - 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차.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타.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익성 강화

2) 사회적경제기업 및 그 외 정의 규정(안 제3조제3호~제8호)

제 정 안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농어업법인·조합·회사·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지역농·축협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 - 지구별 수협 및 업종별 수협, 수산물가공 수협과 수협중앙회 -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산림조합중앙회 - 연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연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 신협과 신협중앙회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 예비사회적기업 - 우수문화사업자 - 그 밖에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국가와 사회적경제조직간 가교 및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등을 촉진하는 조직 ○ 사회적경제연대조직 -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의 협의체·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조직 자발적 결사체 ○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을 포괄 ○ 사회적금융 -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 ○ 사회적경제기업 적합업종·품목

안 제3조제3호는 이 법안의 주된 규율대상이 될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사회적경제기업”은 각종 지원대상이 되며, 기본계획·지원체계·운영 상 의무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어떤

조직이 “사회적경제기업”인지 여부는 이 법안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그동안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외에 농어업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우수문화사업자 등을 포함하고 있음.

제정안의 “사회적경제기업”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에 포함된 조직 중 일부 조직은 공익적 목적과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농어업법인·단체” 중 “농어업회사법인”의 경우 기업적 농업경영체로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영리 조직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농어업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있음.¹³⁾

둘째,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직 중 일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심사시

13) 참고: 농어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비교

구분	농업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주식)	영농조합법인
관련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인의 성격	‘기업적 농업경영체’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협업적 경영체’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임. 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 기술 및 아이디어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

다음,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활촉진을 위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조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20대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음.

참고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대한 해외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해외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법률」	스페인 「사회적 경제법」	캐나다 퀘벡 「사회경제법」
-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상호공제조합연맹, 상호보험회사, 재단 등 5개	- 협동조합, 공제조합, 재단 및 협회,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취업촉진기업, 장애인특별고용센터, 어업조합, 농산물가공업체, 기타 특수재단 등 9개	-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 2개

※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한편, 기획재정부는 법률상 조직이 아닌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가치와 관련성이 낮은 우수문화사업자 등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의 조합공동법인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제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중앙회 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는 제외한다.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

제 정 안

동조합중앙회

- 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사업자
 너. 그 밖에 기업·법인·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조직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 관계망등의 연대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기업
 나. 제3조제4호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3조제5호의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중 대통령령과 관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필한 기업·법인·단체.
7.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사업에 투자·융자·보증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기업 적합업종·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말한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7조)

제 정 안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법령 제·개정 원칙 –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u>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u>

안 제7조제1항은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는 제정안이 사회적 경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밝힌 것임.

또한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향후 법률 제·개정시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률의 모법이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사항을 규정한 것임.

다만, 제7조제2항 단서는 “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법률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 노력의무”는 해당 조항의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법 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관련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며, 이 법의 발효 후 빠른 시일 안에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조문별 검토(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가.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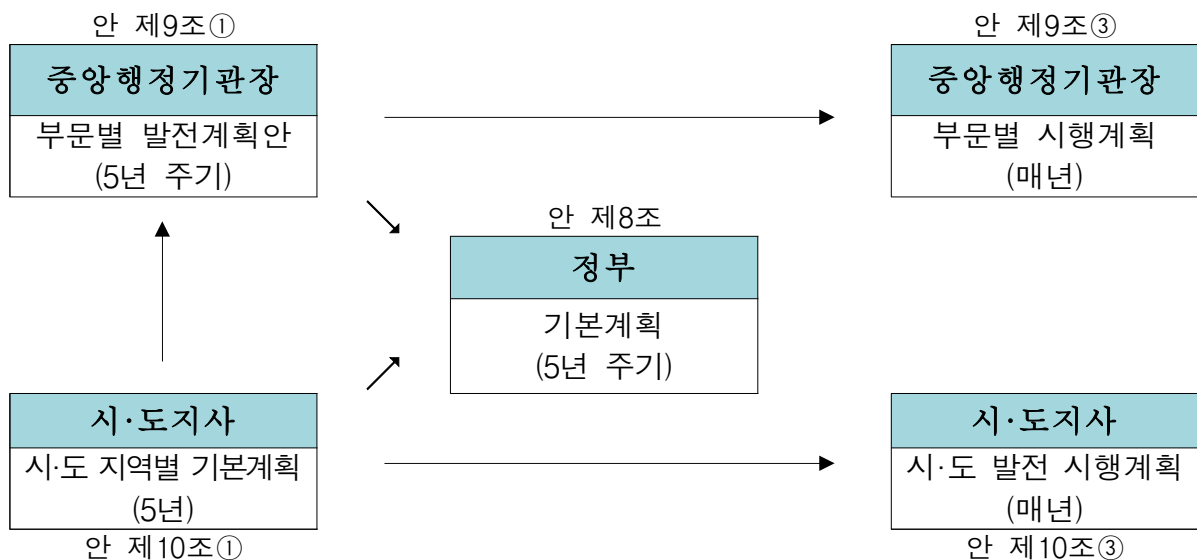
제 정 안
○ 5년 주기의 발전 기본계획 수립 -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 -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통합방향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의 집적과 통계수집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세제·관료·연구개발·조달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운영방안 - 적합업종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총 19개 호)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필요 ○ 국무회의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심의 필요

안 제8조는 정부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안 제9조①,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안 제10조①, 시·도지사)을 기초로 하여 5년 단위

의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상향식 계획수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계획 수립체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각각 5년 주기의 계획과 1년 주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각 5년 주기의 계획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임. 이러한 상향식 계획수립방식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들 수 있으며,¹⁴⁾ 제정안은 이와 유사하게 계획 수립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계획 수립체계 >



1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상향식 계획수립방식은 ① 각 지자체 또는 사회적경제 부문별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건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② 이후 중앙정부가 종합하는 과정에서 체계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특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종류별로 주무부처가 다른 상황(예.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상향식 기본계획은 각 부처의 장기적 계획을 존중하면서 기본계획으로 수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다만,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근거법률 중에는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해당 개별법상 기본계획과 이 법안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법상 기본계획 >

법률명	기본계획	수립주체	수립주기	비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	고용부장관	5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계획	기재부장관	3년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기협동조합 활성화계획	중기부장관	3년	중기협동 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복지부장관	3년	자활기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농림부장관	5년	농어업법인 등

※ 자료: 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는 ①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개별법상 기본계획도 아울러 기초로 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② 일부 개별법상 기본계획은 이 법안과 수립주기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수립주기를 일치시켜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③ 개별법상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부문별 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8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적경제정책의 현황과 전망 2. 사회적경제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촉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9.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통합방향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 정 안

10.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11.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12.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의 집적과 통계수집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14.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세제·판로·연구개발·조달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15.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17.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운영방안
 18. 적합업종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및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련단위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안 제9조~제13조)

제 정 안
○ 5년 주기의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및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추진실적 등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 의무 ○ 5년 주기의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및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 시·도지사 - 추진실적 등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 제출 의무 ○ 시행계획의 협의·조정 ○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 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의무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을,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및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9조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행정부담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한하여 계획 수립 의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의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시·도지사의 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제정안의 계획 수립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21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9조(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사회적경제발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이하 “시·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경제 발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지역현황과 사회적경제 환경분석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부문별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지역공동체 기반구축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민·관협력 촉진방안 7. 시·도별 유통·판로 개척방안 및 시·도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8. 시·도별 재원조달과 지역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9.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도별 공무원과 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지역주민에 대

제 정 안

한 교육 사항

11. 시·도별 적합업종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도 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 기본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부문별, 시·도별 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조직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사업 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4항에 따른 기준과 운영방안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3조(지역발전 시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역의 공동체 기반 확충과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도별 사회적경제 기반확충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회의 등 민·관협

제 정 안

력 공동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충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4. 시·도별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설립과 시·군·구 연계 지원체계 구축방안
 5. 시도별 사회적경제 공유자산과 공유거점 형성에 관한 사항
 6. 시·도별 지역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산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시·도 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 산업에 포함하도록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의 협력 촉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연계·지원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대학·재단·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지역의 전년도 사회적경제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각각 국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14조)

제 정 안
○ 당해 기본계획의 우선 적용 -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적경제발전사업 관련 부문별 계획과 시·도 기본계획에 우선 ○ 계획 수립시 기본계획에 조화 의무 -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 - 「산업발전법」상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 기본계획 - 그 밖에 정부의 모든 계획

안 제14조제1항은 제정안의 기본계획이 사회적경제에 관한 모든 계획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가지며 그 기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

해당 조문은 제정안의 상향식 계획 수립체계에 비추어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안 제8조에 따르면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이를 기초로 기본계획이 나중에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부문별·지역별 계획이 오히려 기본계획의 기초가 되는 상향식 계획 수립체계에서 안 제14조제1항은 계획 간의 관계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고 봄.

참고로 상향식 계획 수립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안 제14조제1항과 같은 규정이 없음.

15) 유사 입법례

「국토기본법」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의 기본이 된다.

16) 이는 기본계획 변경시에도 마찬가지로 상향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적경제발전사업에 관한 부문별 계획과 시·도 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운용의 효과·기대·비중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③ 「산업발전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산업활동에 기여하는 영향 또는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기본계획과 일자리 비중·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 공정거래 등 정부가 세우는 모든 계획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고려하거나 사회적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데에 부합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6. 조문별 검토(제3장):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안 제15조~제21조)

제 정 안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 대통령 소속 -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등 19개 사항 심의 - 위원장 2인(민·관공동) 포함 4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 -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을 둠 ○ 실무위원회 -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 - 민간위원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 ○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 시·도지사 소속 - 위원장 2인(민·관공동)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 ○ 그 밖에 협의 및 조정, 공무원 등 파견 요청, 통계조사 규정 있음

안 제15조는 사회적경제 관련 국가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정책 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18조는 사회적경제 관련 지역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광범위

한 업무영역을 고려할 때 각 개별법에서 이미 설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위원회와 일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법상 위원회와의 연계 또는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관련 개별법상 위원회 현황 >

법률명	위원회명	위원장	비고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심의회	고용부장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정책심의회위원회	기재부차관	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활보장위원회	복지부장관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	마을기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국무총리	농어업법인 등

※ 자료: 기획재정부, 2024. 8.

참고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144호)에서는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가치위원회”¹⁷⁾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기능이 일부 중복될 소지가

17)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제8조(사회적가치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별 사회적 가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위원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공공기관의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을 동수로 구성한다.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업무범위 중 일부를 조정할 필요성 있음. 제정안 중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부분은 법 체계상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안 제18조)의 심의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지역위원회의 설치 취지와 지자체의 자율성 저해 소지를 고려하여 해당 업무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셋째, 안 제16조제3항제1호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은 중요 부분으로 당연직위원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¹⁸⁾를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생략>

「국토기본법」

제27조(구성 등) ① 국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위원 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2023. 6. 9.>

1. 당연직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 위촉위원: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

넷째,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관하여는 해당 위원회가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이며 그 심의·조정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구성·조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하기 보다는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지역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다섯째, 안 제21조의 “사회적경제 통계조사”에 관하여는 “기초조사”와 “여론조사” 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차이점이 불분명하므로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각각 “통계조사”와 “실태조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의 주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조사주기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¹⁹⁾

한편, 기획재정부는 제정안 제16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사회적경제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조직관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임.

19) 참고 입법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5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민·관 공동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
2. 사회적경제 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시·도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종합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사항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정책이행방안 및 점검·보고대회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의제개발 확산과 통합적인 정책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부처간, 조직간, 분야간, 영역간의 협력과 연대, 조정과 융합에 관한 사항
9.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인증 및 지정제도의 정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의 통합적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금융 제도 정비 및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and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경제정책과 관련한 법제도 제·개정과 관련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14. 사회적경제 연도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심의와 개선권고 등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경제 이해관계자 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의 개선사업
1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하거나 요청한 안전에 대한 검토와 조치
17. 사회적경제 연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및 대통령 보고에 관한 사항
18. 적합업종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및 적합업종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19.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국회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민·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에는 정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측을 대표해서는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행정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약간명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3. 국회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정당에서 추천한 각각의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실무

제 정 안

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을 둔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⑧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정부는 위원회의 사무처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시·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두고,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경제과를 둘 수 있다.

⑩ 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⑪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의 구성·운영·예산 및 순차배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민·관 위원등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한다.

③ 실무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과 사회적경제 민간단체등의 실무책임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심의·조정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별 지역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 정 안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지방의회 추천위원, 민·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중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위원: 시·도 부단체장, 관계 부서 실·국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람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부문·분야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덕망이 있는 사람

3. 시·도 의회의 여·야 대표가 추천한 약간명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을 둔다.

⑦ 실무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을 넘도록 한다.

⑧ 그 밖의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국등의 구성·운영·예산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와의 관계, 재정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하여 관련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정책의 연계·통합, 예산 및 조달 확대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경제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사회와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경제분야를 국민통계의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나.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안 제22조)

제 정 안
○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 법인 또는 단체 -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제안 및 협의권 부여 -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안 제22조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업종·부문·분야별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나 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법정화하려는 취지는 ① 정부의 공식 정책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조직에 보장하는 한편, ② 해당 조직의 영세한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할 경우 정부의 정책협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연대조직의 설립·운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고려가 필요하다고 봄.

한편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자발적으로 설립되는 민간 자율조직으로 이에 대해 정부와의 정책협의 권한을 법률로 부여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해당 조직의 수행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20) 제정안에 따른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현재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등을 들 수 있음.

정부가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제정안 제2조제2항²¹⁾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적·독립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2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단위 협의체나 연합체등(이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자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정책을 협의할 수 있다. ④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1) 제정안 제2조(기본원칙)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다.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안 제23조)

제 정 안
○ 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 기획재정부 소관 -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 - 업무범위: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등 14개 사업 -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감독함 - 사회적경제지역혁신센터 병설 가능 - 그 밖에 자료요구, 비밀누설금지, 유사명칭사용금지 등 규정 있음

안 제23조는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경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부칙 제2조22)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경제원으로 확대개편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체계와 제정안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적경제 관련 현행 지원체계와 제정안 비교 >

구 분	현 행	제 정 안
주요 기능	부처별 소관 사회적경제기업별 설립·창업지원, 교육·홍보, 컨설팅, 판로지원 등 집행업무 수행	중앙단위 지원기관인 사회적경제원이 사회적경제 관련부처의 정책개발 지원기능과 재정사업 집행기능 수행

22) 제정안 부칙 제2조(경제원의 설립 및 경과조치)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및 직원의 고용관계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경제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한다.

구 분	현 행	제 정 안
지원 체계	협동 조합 (기재부) 사회적 기업 (고용부) 마을 기업 (행안부) 자활 기업 (복지부) 사회적기업 진흥원 (고용부) - 자활 복지 개발원	협동 조합 (기재부) 사회적 기업 (고용부) 마을 기업 (행안부) 자활 기업 (복지부) 사회적경제원 설립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재부 이관)

제정안은 사회적경제 관련 중앙단위 지원기관을 기재부 소관의 한국사회적경제원으로 일원화하여 현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 지원기능과 재정사업 집행기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 일선 집행단위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각 사업간 연계성이 큼에도 주무부처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관리 및 보조금 정산업무 등이 제각기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행정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기재부 및 한국사회적경제원 소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 찬반의견이 모두 제기된 바 있으므로, 해당 조문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찬성의견은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반대의견은 별도로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는 것은 행정상 비효율 발생이 우려되고 공공기관 신설로 국민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음.

< 사회적경제원 설립에 대한 제20대 및 제21대국회 주요 논의 요지 >

구분	찬 성	반 대
제20대 국회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사 무국의 형태가 필요하므로 설치 필요	○기재부는 거시경제정책 등 전략· 정책기능에 충실해야하므로 기재 부 산하 경제원 설치 반대
제21대 국회	○재정지원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기재부 산하의 사회적경제 원 신설 필요 ○자본주의에 충실한 조직인 기재부보 다 총리실 산하로 두는 것이 적절	○사회적기업진흥원을 해산하고 별 도의 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는 경 우 행정상 비효율 발생이 우려되 고, 공공기관의 신설은 국민의 부 담 증대를 야기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경제조직별로 소관부처·법령·목적 등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경제원 설립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2024년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폐지되어 지방 고용관서에서 제공하는 취업·기업 지원서비스와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므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을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3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경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경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빅데이터 구축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4.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5.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센터 구축사업 6.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개발과 민간자원연계사업 7.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9.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및 사회적 투자 및 신용대출 기준의 개발사업 10.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11.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과 초·중등학교 및 시민사회 교육개발 사업 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제3조제3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교류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정신 계발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제 정 안

3.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수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재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5.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과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조성등 자조적인 사회적금융 조성사업
 8.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9. 사회적경제조직의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 ⑦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경제원의 운영·감독을 총괄하도록 한다.
 - ⑧ 경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경제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 ⑩ 경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⑪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과 민간경제조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원 병설로 사회적경제지역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⑫ 경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⑬ 그 밖에 경제원의 설립·운영, 관련 부처의 역할과 권한, 원장 및 임원의 임명, 조정·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중간지원조직 체계: 권역별 /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 센터(안 제24조·제25조)

제 정 안
○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중앙정부가 지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대상 제외 - 맞춤형 특화 중간지원기관 별도 지정가능 - 운영비 등 지원 가능 ○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 지원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무 -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함

안 제24조 및 제25조는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두 가지 형태로 중간지원조직 체계의 근거를 두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시·도별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이 종류별로 다르고, 정부 선정기관과 지자체 선정기관이 각각 양립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 시·도별 중간지원조직을 살펴보면 마을기업 업무 위탁기관²³⁾과 자활기업 업무 위탁기관²⁴⁾, 지자체 선정 위탁기관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중간지원조직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지자체 차원의 별도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여 개별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사회적

23) 행정안전부 소관임

24) 보건복지부 소관임

경제 정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로 보임.

< 현행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 >

시·도	마을기업 업무 수탁기관(권역, 17개)	자활기업 광역 자활센터(16개)	지자체 선정 수탁기관(15개)
서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협회 경기지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인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광역자활센터 (지자체 직영)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광역자활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자활센터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북	(사)지역과 소셜비즈	경북광역자활센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산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광역자활센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광역자활센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남	사회적협동조합 시드	경남광역자활센터	경남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충북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광역자활센터	-
충남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광역자활센터	충남사회경제지원센터
대전	사단법인 대전마을기업연합회	대전광역자활센터	-
세종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자활센터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남	전남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전남광역자활센터	전남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광역자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자료: 기획재정부, 2024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권역별 지원센터, 특화 중간지원기관 및 시도별 지원센터가 병립하고 있어 중간지원기관 간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업무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중간지원조직이 난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의 공동운영 근거를 마련하거나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 지원센터를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지정된 “권역별 지원센터”가 지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유사 입법례²⁵⁾를 참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2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인력, 시설, 설비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4조(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등) ①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권역별 지원센터의 입찰자격과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 4.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등 당해 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이외에도 교육, 공공조달, 판로촉진, 사회적금융, 지역공동체개발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맞춤형 요구에 부응하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및 특화 중간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정된 권역별 지원센터 또는 특화 중간지원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원의 사업 수행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실무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권역별지원센터 등의 신청·지정·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를 경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 정 안

⑦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권역별지원센터 등을 두는 경우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 방법,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정) ①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권역별지원센터 등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관설민영, 민·관공동운영, 민간 사무위탁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권역별지원센터”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에 대한 그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평가방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7. 조문별 검토(제4장):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가. 사회적금융 제도정비 및 사회적금융기관 지정·육성

(안 제26조·제27조)

제 정 안
○ 사회적금융의 제도 정비 -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 - 신용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조직 여신 확대 등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사회적금융기관의 지정·육성 - 지정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세제상 혜택 등 - 법정기부금단체 간주 규정

사회적금융이란 민간투자·국가재정활동에 의하여 금전적·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 달성 등 “비재무적 수익”까지 아울러 고려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²⁶⁾ 사회적금융의 유형은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비금전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목적투자, 동업자 등 인적결합을 중심으로 한 상호협력금융인 협동금융,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를 추구하는 지역금융 등이 있음.

안 제26조 및 제27조는 정부·지자체가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사회적금융의 전달체계로서 민간의 사회적 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26) 이준호, 「사회적금융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회적금융 법제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제반 영역에 대한 안정화 추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경제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익창출을 기본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상, 사회적금융의 도입으로 인하여 금융제도 전반의 수익성·안전성 등에 부담을 줄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지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는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국가가 사회적금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과 사회적금융 법제화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 훼손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모두 있었는데, 심사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 사회적금융에 대한 제20대·제21대국회 주요 논의 요지 >

구분	찬 성	반 대
제20대 국회	○ 사회적배려 차원에서 국가가 사회적금융을 지원할 필요 ○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필요	○ 사회적금융 및 이에 대한 정부 출자출연의 타당성,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제21대 국회	○ 적어도 금융기관들이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은 필요하고, ‘크라우드펀딩이나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의 조항은 유지할 필요	○ 정부의존형 금융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훼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가 경쟁력 훼손을 가져올 우려

셋째, 안 제26조제4항은 정부는 민간기금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권이 없는 정부에 법률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삭제 또는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27조제2항은 지정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예상되는 소요재원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사회적금융기관은 여타 금융기관과 달리 재무적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운영상 재무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이 불가피하여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음.

다섯째, 안 제27조제5항은 사회적금융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정기부금”이라는 용어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특례기부금”으로 변경되었음. 또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특례기부금 단체는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에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⁷⁾

한편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전반에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회적금융제도 정비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임.

27)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은 동법, 국세기본법, 개별 세법, 조약 및 그 밖에 동법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적합한 크라우드펀딩, 사회성과연동채권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 3.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4.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여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제도정비 및 상품 개발 5.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설립등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6.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금융제도의 정비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기반 조성 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한다. ④ 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27조(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과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전달체계로서 지역·업종·부문·전국단위로 협동조합 금융, 사회적경제공제기금, 비영리민간재단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개인·법인·단체등이 출자·용자·투자·기부를 통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편의 및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설립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에 출자, 용자, 온랜딩, 용자사업 위탁등의 방법으로 민간 사회적금융기관들이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정 안

④ 사회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융자 또는 무상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한 투·융자 사업
3.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사업
4. 사업경영상 위기 시의 긴급구제 금융사업
5. 사회적경제 투융자에 따른 손실 보상 지원사업
6.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운용과 업무의 위탁
7. 사회적경제공제기금의 위탁운영사업
8. 사회적경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금조성사업

⑤ 사회적금융기관으로 인증·지정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금융기관의 설립·지정 및 재정지원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
(안 제28조~제32조)

제 정 안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 주요재원 · 정부·지자체의 출연금 · 기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입금 등 - 주요용도 ·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운영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금융기관 역량강화 등 ○ 별도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가능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 민간기금 조성 -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체 민간기금 설립근거 마련 - 세제상 혜택 지원근거 포함

제정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금융 지원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회적금융기관 등이 민간기금을 설치하고 세제상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 제28조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 자생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실을 감안하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

정지원이 부처별·칸막이식으로 운영되어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기금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측면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은 정부 출연금
이외에는 사실상 안정적인 자체재원이 없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상 기금 신설요건²⁸⁾을 충족하지 않아 설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기획재
정부의 반대의견을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안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기금 재원 중 하나로 “기존의 사회
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해당되는 재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보이
므로 삭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28조제4항은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역사회
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지방자치법²⁹⁾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8)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29)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
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안 제32조의 “민간기금”의 구성에 대해서는 민간기금의 조성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필요하고, 민간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규정을 두는 경우 기업은 이를 일종의 준조세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이 있는 바, 심사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8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기금 또는 금융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으로부터의 전입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별도의 지역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지역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사업

제 정 안

3. 사회적경제 자본시장 조성 및 사회적금융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4.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역량강화사업
5. 사회적경제 공제기금 등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금융 조성 및 이에 대한 투자
6.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사회적투자 기준에 관한 사항
7. 기금심의운용위원회가 정한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기금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관리하며 지역기금은 시·도지사가 운영·관리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각각 기금과 지역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제3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소속으로 독립적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건전성 감독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분리하여 기금조성 및 관리감독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금운영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금융기관 등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⑥ 시·도 지역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의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⑦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금의 관리·운영·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 제32조(민간기금의 조성)** ① 사회적금융기관 및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투자기금인 민간기금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투자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기업·법인·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편의와 세제상의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민간기금은 제28조에 따른 기금과는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④ 민간기금의 조성 절차와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8. 조문별 검토(제5장):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육성

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대부 등 우대조치 (안 제33조·제35조·제36조)

제 정 안
○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 의무 ○ 국·공유재산에 대한 할인 및 무상 임대·양여 근거 ○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근거

안 제33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의무를 두고,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의무구매액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35조는 국·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할인 또는 무상으로 임대·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6조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는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조문에 대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안 제33조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과 함께 구매목표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고, 모든 기관

에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는 경우 개별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등 우선구매제도로 인하여 품질경쟁력을 갖춘 일반기업의 경쟁기회가 사실상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시행현황 >

근거법률	우선구매대상	소관부처	우선구매 목표비율 (시행령 등)	비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제품	고용부	×	구매 촉진 규정
협동조합 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제품	기재부	×	구매 촉진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기업제품	복지부	×	구매 촉진 규정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복지부	물품·용역 구매액의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중기부	총 구매액의 5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개발제품	중기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제품	중기부	물품·용역 5%, 공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제품	중기부	총 구매액의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물품	고용부	물품·용역 구매액의 0.8%	

※ 자료: 기획재정부, 2024

둘째, 안 제33조제4항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양여 등 우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은 동 법 별표를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³⁰⁾

셋째, 안 제36조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3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33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인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과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외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의 대상과 기준, 규모와 절차등은 공공성과 사회적공헌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조달원리를 구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공공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35조(시설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여 할 수 있다.

제36조(조세감면 및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재화와 용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

제 정 안

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기업이나 법인·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세제상의 감액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조직의 성격을 변경하는 경우
2. 사회적경제조직이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3. 사회적경제조직이 상법상의 일반 기업이나 민법상의 일반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금융기관에 기부·출연하거나 투자하는 일반의 기업·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나.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보급 및 그 밖의 지원
(안 제34조, 안 제37조~제41조)

제 정 안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보급 -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기여 측정을 위한 계량화된 성과지표 개발 -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과평가 및 결과 보급 ○ 그 밖의 지원 사항 - (교육훈련)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제공, 초·중·고 학생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 개발·시행 - (민간참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참여 정책 개발·시행, 국가 등이 사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 부여 - (협력·연대촉진)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 - (국제협력)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국제기구 등 교류·협력사업 및 이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촉진 - (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 청년의 사회적경제 창업 및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 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지원책 마련

안 제34조는 정부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기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회적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제공, 초·중·고 학생 등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 개발·시행, 국가 등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가점부여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 제34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민간영역의 가치 창출 활동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자율적·독립적 운영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설립목적 및 운영방식이 상이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획일적·계량적 성과지표 개발은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34조(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실천 및 기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평가지표(이하 “사회적성과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회적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본, 인원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사회적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실천 및 기여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회적성과지표의 개발, 보급 및 그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교육·훈련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제 정 안

4.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

5.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제교육단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과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주기에 맞는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무원과 초·중·고 학생 및 청년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 사회적경제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과 다양한 자원연계·협력 지원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지원 사업

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계·지원 사업

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9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등

제 정 안

2.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공동사업의 촉진
3. 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트 조성
과 판로유통망 구축등

②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기업간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간에 지역, 업종, 부문, 분야, 전국단위 연대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호바목에서 과목까지의 협동조합 등의 조직은 지역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등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발적인 조직통합 또는 경영통합을 하려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상·행정상·세제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0조(국제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과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관련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청년층의 창업활동 촉진과 참여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역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발굴 및 육성, 청년창업을 위한 사회혁신 창업보육센터 설치등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사회적경제 창업과 혁신적인 창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공간 및 시설지원, 활동비의 보조, 기금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정 안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유용한 청년층의 정책적·사업적 지식창안과 제안 및 계획의 수립을 적극 권장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청년층의 사회적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조문별 검토(제6장):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

가. 운영의 공개 및 경영공시(안 제42조·제43조)

제 정 안
○ 운영의 공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 공개범위 · 정관, 규약 등 운영에 관한 규정 · 총회, 이사회 등 회의록/의사록 · 회계장부 · 그 밖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사항 ○ 경영공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 공개범위 · 정관, 규약 등 운영에 관한 규정 · 총회, 이사회 등 회의록/의사록 · 사업결산 보고서 - 비공개 가능 · 공개하는 것이 해당 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안 제42조 및 제4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운영규정 및 회의록, 회계장부 또는 사업결산보고서를 공개하고 경영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이 법안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봄.³¹⁾

다만, 안 제43조제5항에서 경영공시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는 다른 입

31) 유사 입법례: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및 제49조의2

법례에는 없는 표현으로서, 법문상 불확정개념이고 구체적 판단 주체 및 객관적 기준 등이 모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봄.

참고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규정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³²⁾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공개 및 경영공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운영공개 태만 및 진술·보고의무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³³⁾

3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이하 생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생략)

33)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행정안전부는 이사회 회의록 등 일부 서류는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률적 공개 시 영업 비밀, 경영의 자율성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 조직의 특성에 맞게 개별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42조(운영의 공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회계장부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정관, 규약등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3조(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2. 총회,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3. 사업결산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경제조직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이 해당 사회적경제조직의 운영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조문별 검토(제7장): 보칙

가. 자료제출 요구권 및 국회보고(안 제44조·제45조)

제 정 안
○ 자료제출 요구권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직무상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야 함 ○ 국회보고 -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기본계획 등을 수립·심의하였을 때 국회 보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및 그 이행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시도지사 및 지역위원회는 지역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추진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 - 국회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안 제44조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45조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 등이 각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도의회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지역 기본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 제45조에서는 국회가 국회 소속으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소관하고 있는 현행 국회 상임위원회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국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통합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4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국회보고 등) 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제8조,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국가전략과 기본계획등을 수립·심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지역위원회는 지역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및 추진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제도·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벌칙 및 과태료(안 제46조·제47조)

제 정 안
○ 벌칙(직무상 비밀누설) -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유사명칭사용)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 제46조 및 제47조는 제정안에 규정된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제정안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에 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벌금형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제19대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정비방안으로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을 적정비율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개별 법률에서 지속적으로 벌금형의 상향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벌금형의 상향조정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재산형의 현실화를 통해 범죄 억지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후 과태료의 과별절차는 표준화되었으나, 부과권자는 개별 법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과태료 부과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46조(벌칙)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제23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의 처
02)6788-5151